
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대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15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1. 12.

발 의 자 : 강대식 · 박준태 · 이인선

김 건 · 박덕흠 · 유용원

이양수 · 고동진 · 김상훈

백종헌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라 운항승무원 및 항공관제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자격증명의 종류별로 항공전문의사에게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아야 하며,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항공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.

그런데 현행법령은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·방법 등을 정하고 있을 뿐 수검자의 병력(病歷) 등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부터 기준 해당 여부를 통보받거나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 현재는 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 시 수검자의 자체문진표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 있는 상황임.

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항공전문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항공신체검사증명 대상자의 질병이나 심신장애 등 개인정보를 보유하고

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개인정보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항공종사자의 자격관리 및 항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(안 제40조의2 신설).
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항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40조의2(자료제출의 요청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0조제2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4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항공전문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항공신체검사증명 대상자의 질병이나 심신장애 등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개인정보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조회 요청을 받은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제40조제2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만을 통보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라 요청하는 대상기관과 개인정보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40조의2(자료제출의 요청) ①</u> <u>국토교통부장관은 제40조제2항</u> <u>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의</u> <u>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</u> <u>하기 위하여 제49조제1항에 따</u> <u>라 지정된 항공전문의사가 필</u> <u>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항공</u> <u>신체검사증명 대상자의 질병이</u> <u>나 심신장애 등 개인정보를 보</u> <u>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</u> <u>당 개인정보의 조회를 요청할</u> <u>수 있다.</u> <u>② 제1항에 따른 조회 요청을</u> <u>받은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</u> <u>는 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</u> <u>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할 때에</u> <u>는 제40조제2항에 따른 항공신</u> <u>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적합한지</u> <u>여부만을 통보하여야 한다.</u> <u>③ 제1항에 따라 요청하는 대</u> <u>상기관과 개인정보의 내용 등</u> <u>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</u> <u>정한다.</u>